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317

발의연월일: 2022. 11. 18.

발 의 자:김영진·강준현·김경협

유정주・이수진(비・이정문

이학영 • 전용기 • 진성준

최종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위험을 예측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미리 갖추 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 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침수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선제적인 침수 예

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안 제3조제2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안 제5조제3항제5호의2) 체계적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법률 제 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처리하여야 할"을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의2 중 "침수예방"을 "침수 발생 예측평가 및 예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환경부장 관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
| 무) ① (생 략) | 무) ① (현행과 같음) |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 | 2 |
| 수도의 설치 • 관리를 통하여 관 | |
| 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 |
| 및 분뇨를 적정하게 <u>처리하여야</u> | <u>처리하고 하</u> |
| <u>할</u> 책무를 진다. | 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
| | <u>예방할</u> |
|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 |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 |
| 립권자 등) ①·② (생 략) | 립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 |
| | 승) |
|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 | 3 |
|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 |
| 한다.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 | 5의2 |
| 한 관할 구역의 <u>침수예방</u> 에 | <u>침수</u> 발생 예 |
| 관한 사항 | <u>측평가 및 예방</u> |
| 5의3. ~ 14. (생 략) | 5의3. ~ 14. (현행과 같음) |